

2024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 일시·장소 : 2024. 1. 19.(금) 10:00~11: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 참석 : 11명
 - 위촉 위원(7)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영희, 김원규, 김수정, 임준규, 임혜진
 - 소관 부서(4) : 시민인권보호관(2),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상정안건 : 총 3건

-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 의결사항 : 2건(기각 2건)

심의결과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3건	2건	-	1건
보고사항	1건	1건 (각하 1)	-	-
의결사항	2건	1건 (기각 1)	-	1건 (기각 1)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4-1	23신청-30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폭력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2건(기각 2건)				
24-2	23신청-26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원안가결
24-3	23신청-31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재상정

□ 보고사항

○ [의안 제24-1호]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폭력

- 23신청-30 (각하) 원안가결
- 신청인이 학술대회 참가 중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피신청인)과 저녁 식사 중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갑자기 손으로 신청인의 목을 졸랐다고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을 원안가결함

□ 의결사항

○ [의안 제24-2호]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 23신청-26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은 당초 인권담당관에 서울시○○공사의 개인의 민감 내용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업무 해태로 인권침해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고 있고 제기한 민원에 대한 불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배정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단지 시설물 이용의 불편사항으로 치부하는 답변을 해서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사건을 신청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4항에 근거해서 민원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을 소관 부서에 배정한 절차를 소명한 것으로, 이를 인권침해 사항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위원 전원 동의하고 기각 결정하기로 함

○ [의안 제24-3호]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3신청-31 (기각) 재상정
-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겪은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달라며 사건을 신청함
- 2023년 3월 11일 피신청인이 화가 난 듯 짜증을 내는 소리를 질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본래 목소리가 커서 큰 소리로 말한 것이지 신청인에게 감정을 넣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건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음.

2023년 5월경 카카오톡 입소자 단체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소자들의 의견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법 관련 책 좀 읽으라는 무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음
2023년 11월 25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화가 난 듯 소리를 질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과 참고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함

- 피신청인의 행위는 이 사건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표현 방법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을 위협하고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감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인격권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 의견을 올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 중에는 폭력 경험으로 인해 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조사된 참고인들을 보면 피신청인의 입장에 서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의 수가 많아 보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입소자들 1~2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카카오톡 단체방이 삭제되어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간 사진이 외부로 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여 전원 동의로 재상정으로 결정함